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③

신청기관

방송통신위원회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조 용 혁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
concerned with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cy relief

연구자 : 조용혁(초청연구원)
Cho, Yong Hyuk

2014. 9. 1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수반되는 신고자 요건 및 조회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
 - 그러나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규율체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도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남
- 위치정보법의 개정으로 경찰관서가 보다 신속하게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요건과 절차의 간소화는 긴급구조기관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긴급구조기관에서 경찰관서로 확대됨에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위치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II. 주요 내용

□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관련 현황

- 먼저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통계 및 활용프로세스를 파악하고,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에 관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 그리고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경찰청 소관 규정을 분석함

□ 긴급구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에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본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의 타당성 등의 문제점을 구조요청자의 유형에 따라 분석함
- 긴급구조대상인 실종아동을 중심으로 위치정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함
- 긴급구조가 요구되는 상황과 이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필요성이라는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필요한 상황적 요건에 대하여 자살예고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위치정보법이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입법주체와 입법시기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 급박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함
 - 긴급구조기관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자-구조대상자 간 관계확인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긴급구조의 신속성 제고방안
 -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자의 보다 정확한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조치의 도입방안
- 이동통신역무 이외의 수단에 의한 긴급구조요청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과 긴급구조용 특수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
-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위치정보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신속·효율적인 긴급구조를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이로 인한 부작용의 예방책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인명구조활동에 관련된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함
-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 요건 및 조회절차 등에 관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공목적의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

- 입법 추진예정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에서 정책적인 참고자료로 활용

▶ 주제어 :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법,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긴급구조기관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

- It is necessary to make a reasonable rule for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cy relief(“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and “police agency”) without abuse and mis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Purpose of this stud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legal issues concerned with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cy relief and to finally suggest legislative policy approaches to improve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II . Main Contents

Current state of emergency relief us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 Use statistics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cy relief
- Use procedur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cy relief
- Current legislation status and history about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cy relief

-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ACT concerned with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cy relief
 - Collection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without consent
 - Improvement of regulations for protection of child
 - Requirement about circumstance for Emergency relief
 - Improvement related to distinctions between two emergency agencies(“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and “police agency”)
 -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and technological measure for prompt Emergency relief
 - Corded telephone, internet telephone and emergency telephone number

III. Expected Effect

-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o improving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concerned with use of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for emergency relief.
-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provide the legal framework for location privacy protection in emergency relief,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etter environment for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and “police agency” using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 Key Words : Individual Location Information,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LBS, Emergency Relief, Emergency Rescue and Relief Agency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	13
제 2 절 연구의 내용	14
제 2 장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관련 현황	17
제 1 절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현황	17
1.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 통계	17
2.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 프로세스	19
제 2 절 긴급구조 관련 규정의 연혁	20
1.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의 근거 마련	20
2. 긴급구조 수행기관의 확대	22
제 3 절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활용에 관한 현행 제도	25
1. 위치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5
2.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30
3.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 규칙」	32
4.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및 관리 지침」	33
제 3 장 긴급구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37

제 1 절 긴급구조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의사	37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 등	37
2. 구조요청자의 유형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의사	39
3. 구조요청권자 범위의 조정	45
제 2 절 긴급구조 대상으로서 아동	46
1. 위치정보법 상의 아동의 개념	46
2. 긴급구조대상 실종아동 관련 개선방안	51
제 3 절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위치정보 요청의 상황적 요건)	53
1.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이 필요한 상황	53
2. 자살예고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요청의 적절성	54
3. 개선방안	60
제 4 절 개인위치정보 활용기관의 통일적 규율	61
1. 기관별 개인위치정보 요청의 요건	61
2.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 요건의 통일방안	63
제 5 절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	66
1. 가족관계의 확인 절차 개선	66
2. 개인위치정보 정확성의 제고	75
제 6 절 긴급구조 요청수단의 문제	78
1. 이동통신 외의 전화서비스에 의한 긴급구조요청	78
2. 긴급구조용 특수전화서비스의 정비	84
제 4 장 결 론	89

참 고 문 헌 93

[붙임]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에 관한 근거를 둔
법률 9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은 종전에는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과 그 배우자 등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소방본부·소방서·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¹⁾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지만, 경찰관서(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는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었다. 이로 인하여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112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 신속한 출동을 통해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2012년 수원 여성 납치살해 사건(일명 오원춘사건) 당시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자 구출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그해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경찰관서도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에 수반되는 신고자 요건 및 조회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지만,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규율체계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도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1)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개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긴급구조기관은 국민안전처와 소방본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서·해양경비안전서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치정보법의 개정으로 경찰관서가 보다 신속하게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요건과 절차의 간소화는 긴급구조기관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긴급구조기관에서 경찰관서로 확대됨에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먼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현황과 긴급구조를 위치정보이용에 관한 법제의 연혁과 현행 제도를 살펴보고, 다음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에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본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의 타당성 등의 문제점을 구조요청자의 유형에 따라 분석해보기로 한다.

둘째, 긴급구조대상인 실종아동을 중심으로 위치정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셋째, 긴급구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요건의 충족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측면은 물론 이거니와 사회안전망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살예고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필요한 상황적 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넷째, 위치정보법이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입법주체(정부-의원)와 입법시기(2005년-2012년)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다섯째, 급박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한다. 먼저 긴급구조기관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자-구조대상자 간 관계확인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긴급구조의 신속성 제고방안을 살펴본다. 그리고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자의 보다 정확한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조치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여섯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과 관련한 여타 법적 문제로서 이통신역무 이외의 수단에 의한 긴급구조요청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과 긴급구조용 특수전화서비스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 2 장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관련 현황

제 1 절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현황

1.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 통계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긴급구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개정으로 경찰관서가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되면서 2013년부터는 경찰관서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제공도 추가되었다.

<표 1> 이동통신사 최근 3년간 긴급구조기관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²⁾

연 도(단위:건)		'12년	'13년	'14년(~9월)
SKT	소방방재청	5,011,197	5,187,551	2,024,309
	해양경찰청	1,031	1,368	775
	경찰청	-	917,057	459,121
KT	소방방재청	1,424,461	2,274,993	1,065,065
	해양경찰청	965	819	531
	경찰청	-	555,367	467,685
LGU+	소방방재청	921,956	1,028,369	919,925
	해양경찰청	533	221	270
	경찰청	-	298,564	419,888
합계	소방방재청	7,357,614	8,490,913	4,009,299
	해양경찰청	2,529	2,408	1,576
	경찰청	-	1,770,988	1,346,694
	합 계	7,360,143	10,264,309	5,357,569

2) 미디어뉴스, “국민 5명 중 1명 ‘위치정보’, 경찰 등에 제공됐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00>

제 2 장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관련 현황

종래에 긴급구조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해오던 긴급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신고 처리 건수는 각각 146,486건과 132,774건에 이른다.

<표 2> 소방방재청 위치정보조회신고 처리 실적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주1)}
처 리	구 조	2,103	3,854	3,554	1,104
	사체발견	160	155	166	52
	수색 중 연락	5,293	7,963	6,876	1,381
	차체귀가	2,907	4,832	4,375	884
	수색 중 타기관 인계	12,053	20,536	29,874	2,247
	가족발견(연락)	2,370	3,249	2,761	533
	소 계	24,886 (25.3)	40,589 (27.7)	47,606 (35.9)	6,201 (27.4)
미처리	미발견	24,006	40,866	29,290	5,615
	신고취소	13,778	16,429	16,459	2,207
	조회실패	3,368	7,032	7,609	1,229
	소 계	41,152 (41.9)	64,327 (43.9)	53,358 (40.2)	9,051 (40.0)
기 타 ^{주2)}		32,203 (32.8)	41,570 (28.3)	31,810 (24.0)	7,376 (32.6)
합 계		98,241	146,486	132,774	22,628

주1)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처리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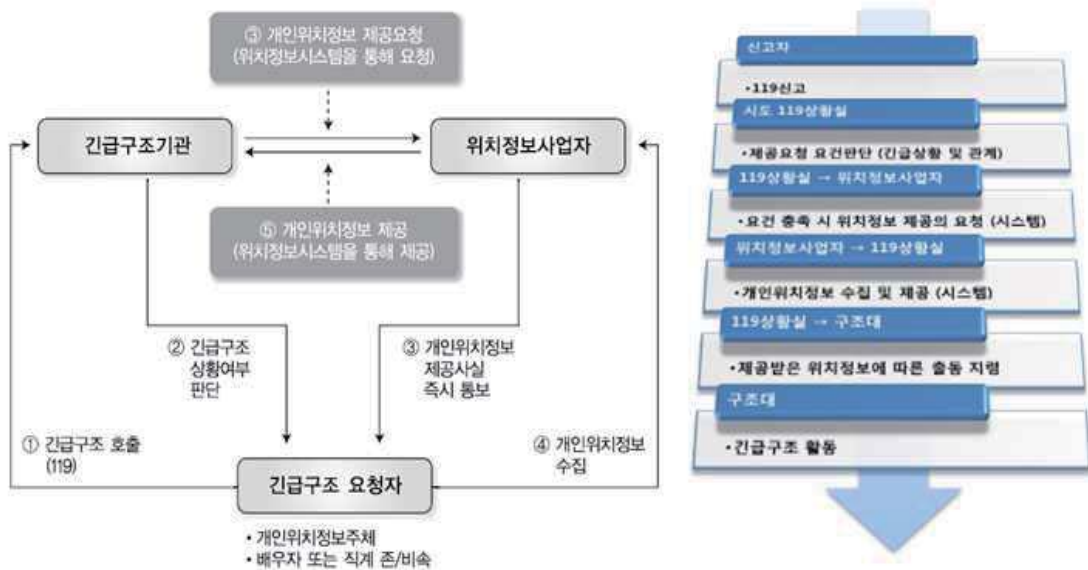
주2) 위치정보법 상의 가족관계(배우자, 자녀, 후견인 등) 미포함, 기타 단순문의 등

2.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 프로세스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활용 프로세스를 소방방재청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고자가 119를 통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하면, 소방방재청 등은 긴급구조 상황여부를 판단한 후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던 위치정보조회를 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2006년 10월 시·도 소방상황실로 이관하였다. 다만, 시·도에서 위치정보조회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방재청 상황실에서 수행한다.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등은 구조대에게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에 따른 출동지령을 하고, 구조대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긴급구조 활동에 나서게 된다.

<그림 1> 소방방재청의 위치정보 활용 프로세스



제 2 절 긴급구조 관련 규정의 연혁

1. 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의 근거 마련

우리 국회는 2004년 12월 29일, 그해를 겨우 이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5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수십 개의 법률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위치정보법을 전혀 논의 없이 전원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통과과정을 보면 입법과정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2002년 10월 2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청회가 법률안의 형태로 공개적인 논의과정이 시작된 최초 시점이었으며, 이에 앞서 수년간의 기초연구와 입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위치정보법은 다년간의 작업을 통하여 진행된 입법으로 초기부터 정부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입법도중에 GPS의 의무화가 논의되면서 시민단체의 심한 반대를 겪으며 의원입법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한 GPS의무화 여부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후 정부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위치정보법의 입법의 1차적인 목표는 완성된 법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법안의 골격을 세우는 작업이 우선되었고, 법률을 제정한 후 법률의 개정 기회에 추가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위치정보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SDI의 불법위치추적³⁾, 지리산 조난자의 위치추적 불가⁴⁾ 등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회적인 사

3) 대기업 노동자들과 산재가족 등이 최근 3개월 이상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동통신사의 위치추적서비스인 “친구찾기”에 가입되어 650여 차례 위치추적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위치를 추적한 휴대폰은 11개월 전에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밝혀졌다.; 한겨레, ‘사망자 휴대폰’ 노동자 위치추적, 2004. 7.

4) 계곡에 추락한 고 모씨는 휴대폰으로 119에 구조요청을 한 후 배터리가 소진되어

건이 발생하면서, PD수첩 등에서 시리즈로 연재되는 등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었다.⁵⁾ 입법과정에서 위치정보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법률 제정에 힘을 받게 되었고 특히, 위치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었으며, 국회에 관련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입법청원도 있었다.⁶⁾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언론에서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법명이 처음에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당초 입법에 참여한 실무자 선에서는 “보호 및 이용”으로 제안되었으나, 정보통신부 내에서의 보고과정에서 산업적 고려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의지가 반영되어 “이용 및 보호”로 변경되었다가, 국회에서 “보호 및 이용”으로 변경된 것이다.

위치정보법의 최초 초안은 이영대 변호사가 미국의 입법초안⁷⁾ 및 외국사례 등을 연구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것이 있으나, 정보통신부의 실무 사무관들이 정부입법을 위한 TF팀⁸⁾을 구성하면서 실무 선에서 동 초안의 대부분의 내용이 수정되었고,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상당부분 수정이 이루어졌다.⁹⁾ 또한, 제17대 국회 과학

더 이상 통화가 불가능하였다. 119구조대는 황급히 이동통신회사에 위치추적을 요구하였으나, 현행 법규상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MBC, ‘생명이나 사생활이나’, 2002. 9. 17.

5) http://news.naver.com/vod/vod.nhn?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047124§ion_id=001

6) 위치정보법의 입법배경으로 간혹 언급되고 있는 위치정보의 특성으로서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가능성, 침해의 즉시성, 미래 위험 유발가능성”은 필자가 입법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특징인데, 여러 문헌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필자로서는 매번 소회가 새롭다. 다만, 공지의 사실이거나 당해 문헌의 저자의 생각처럼 인용되고 있는 점은 역시나 아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 미 상원의원이 위치정보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바 있었으나, 당시 부결되었다.

8) 필자와 당시 전자통신연구원에 재직 중이었던 남광우 교수(현 군산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등으로 구성되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9) 2002년 공정회에서 공개된 법안과 2003년 정보통신부의 입법예고안도 상당한 차

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총 28개 조문을 수정하는 “위치 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이 제안되었다. 이때에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예외 없이 매회 즉시 통지하도록 하고 ② 공공구조기관을 긴급구조기관으로 변경하고 ③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요청의 전제가 되는 긴급구조요청자의 범위를 당사자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하고 ④ 의사 무능력자등의 보호를 위해 의사무능력자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⑤ 본인의 동의에 갈음하여 법정대리인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7세 미만”에서 “8세 이하”로 변경하는 등의 변경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1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¹⁰⁾ 14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변화·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의 상황적 한계와 시대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위치정보법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며, 태생적으로 완결되지 못한 부분과 사후적으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위치정보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2. 긴급구조 수행기관의 확대

긴급구조기관은 국회에 제출된 위치정보법 원안에서는 그 명칭이 “공공구조기관”이었으며, ①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와 ② 위치정보 이용 및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확보를 요건으로 하고,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경보발송을 요청

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10) 위치정보법의 공포 후 즉시 긴급구조와 관련된 규정의 시행을 요청한 소방방재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는 공포일인 2005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119 서비스”로 한정하며, 수사·공안을 목적으로 한 “112”와 “111”은 유보토록 할 계획이었으며, 이에 따라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119 긴급구조 호출”에 의해 직접적인 구난활동이 가능한 소방방재청과 소방서 등으로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해양구난의 경우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등을 포함토록 할 계획이었다. 이러던 것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으로 법률에서 명시되게 되었다.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이슈로서, 위치정보법을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도구로서 삼으려한다는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주무부처(정보통신부)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즉, 소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내지 수사관서, 정보수사기관 등이 긴급구조를 명분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빅브라더”문제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입법과정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긴급구조기관에 경찰관서 또는 수사관서, 정보수사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으로 한정되었다.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의견¹¹⁾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긴급구조”라는 목적달성과 “112신고전화” 시스템에 위

11) 이러한 시각은 위치정보법의 입법 이후에도 지속되어왔다. 2012년 5월 1일 인권단체연석회의가 발표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개인의 위치정보를 과잉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획득하여 온 현재까지의 경찰의 수사관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찰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바로 획득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상당한 오남용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치정보 요청·수령·보안시스템 구축비용,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위치 정보 남용의 위험도 등을 이익형량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관서를 개인위치정보 요구 주체로 추가하는 것으로써 향상되는 긴급구조 목적 달성보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우려 및 수반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¹²⁾

하지만, 경찰관서는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과는 달리 개인위치정보의 획득권한을 가지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112번호를 통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하더라도 경찰관서가 이를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급박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기존의 긴급구조기관뿐 아니라 경찰 역시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고경화 의원안, 2007년 1월 10일)과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최인기 의원안, 2008년 7월 31일), 개인위치정보주체와 사전에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정보통신기기의 고유접수번호를 근거로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서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변재일 의원안, 2008년 9월 8일),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요청 가능 대상 기관에 경찰관서를 추가하는 안(신상진 의원안, 2009년 8월 25일) 등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 가운데 하나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엄격한 절차를 통하여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의 획득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경찰관서에 대해서는 위치정보 획득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었다.¹³⁾

12) 오태원, “코드이론을 통한 위치정보법 분석”, 『인터넷법률』 통권 제39호, 법무부, 2007. 7, 169쪽.

13) 최민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그러던 것이 2012년 수원 여성 납치살해 사건(이른바 “오원춘 살인 사건”)을 계기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경찰관서가 포함되게 되었다. 긴급구조기관에 경찰관서를 포함하여야 하는가는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식과 공적기관(경찰관서)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할 것인데, 입법을 통하여 긴급구조기관의 범주에 포함된 이상은 다시 이를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활용에 관한 현행 제도

1. 위치정보법 및 같은 법 시행령¹⁴⁾

1)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 활용의 유형

위치정보법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의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등이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要救助者)의 개인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구조에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긴급구조기관이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 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것이다.¹⁵⁾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 2, 4쪽

14)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과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이 있으나, 긴급구조와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아니하기로 한다.

15) 경보발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과 유사하나, 위치정보법의 경보발송은 “위험지역에 위치”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으로 제한됨에 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는 지역적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위치정보법 제29조 제

구조요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은 긴급구조 수행기관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경찰관서가 요청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소방서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말하고, 경찰관서란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를 말한다.

2) 긴급구조기관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그 배우자등(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미성년후견인을 말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29조 제1항).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9조 제5항).

이때 긴급구조요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라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다음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하며(제29조 제4항),¹⁶⁾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¹⁷⁾

7항의 경보발송은 위험상황에 놓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활동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16) 긴급구조에 관한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긴급구조 상황	특수번호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 122 민원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119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①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③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8조).

배우자들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9조 제1항),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제29조 제8항),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위치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3).

긴급구조기관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29조 제6항).

3) 경찰관서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활용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본인 또는 목격자, 구조요청을 받은 제3자, 실종 아동등의 보호자로부터 구조요청이 있으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이때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대상은 구조를 요청한 자(신고자)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다.

17)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표 3> 경찰관서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 대상

신고자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 대상	비고
요구조자 본인(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요구조자	
목격자(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	목격자의 동의 필요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제3자(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요구조자	요구조자의 의사확인 필요
보호자 ¹⁸⁾ (실종아동등 ¹⁹⁾ 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	

제29조 제2항 제1호 중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는 요구조자(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자)의 근거리에서 위험상황을 직접 목격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근거리(至近距離)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제29조 제2항 단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를 목격자로 축약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요청을 받은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대상이 “위험에 처한 자”가 아닌 “목격자”이다.²⁰⁾ 이는 “목격자”의 위치정보를 통하여 “위

1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1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20) 따라서 경찰관서가 목격자의 구조요청으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험에 처한 자”의 위치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격지(隔地)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한 제3자는 제29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제29조 제2항 단서가 “어떤 일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을 뜻하는 목격자(目擊者)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위험상황을 직접 목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요구조자와 제3자가 지근거리에 있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제29조 제2항 제2호는 급박한 위험상황에서 요구조자(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자)가 가족 등 제3자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그 제3자가 다시 경찰관서에 요구조자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제3자가 요구조자와 지근거리에 있는 경우라면 제29조 제2항 제1호의 목격자로서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제29조 제2항 제2호는 기본적으로는 격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²¹⁾ 이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위치정보법 시행령은 그 확인방법으로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첫째, 사전에 경찰관서·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리고,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²²⁾ 둘째, 요구조자가 음성·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음성·문자메시지를 확인함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1) 요구조자가 지근거리에 있는 제3자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제3자가 바로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으나, 제2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자면 요구조자의 명시적인 구조요청의사가 요구된다는 점과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2)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이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로써 요구조자의 의사확인에 갈음할 수 있다. 셋째, 그 외의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직접 구조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사확인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하지만, 구조받을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방법은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할 수 있다.

이외에 ①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과 ②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요청·제공 ③ 위치정보사업자의 거부 제한 ④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한 확인 ⑤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의 긴급구조 목적 외 사용 금지 ⑥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⑦ 개인위치정보 요청·제공사실의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 등은 긴급구조기관의 경우와 같다.

2.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

소방방재청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긴급구조와 관련한 예규로서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를 이동전화 단말기가 접속하고 있는 기지국 위치 또는 단말기의 GPS 좌표인 이동전화위치정보로 한정하고 있다(동 지침 제2조 제1호).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이동전화의 위치정보 요청은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조회²³⁾를 원칙으로 하지만, 긴급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²⁴⁾을 통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 지침 제8조).²⁵⁾

23) 이동전화로 119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위치정보를 상황실에 자동으로 표출함으로써 신속한 현장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24)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 및 시·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서울특별시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25)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는 위치정보시스템에 이동전화 단말기 번호를 직

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과 획득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의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고(동 지침 제6조 제1항), 획득한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지침 제7조 본문). 다만,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긴급구조 현장에 동원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등과 경찰 등의 유관기관에게는 습득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지침 제7조 단서).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치정보법 제29조 제8항26)에 배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치정보법 제29조 제8항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 그리고 그 종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구조요청을 가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등 긴급구조목적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는 점과 구조요청자의 정보를 신고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긴급구조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 지침의 단서 규정은 위치정보법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²⁷⁾ 다만, ① 그 대상이 이미 “긴급구조 현장에 동원”되어 긴급구조기관과

접 입력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험에 처한 사람의 구조를 일정한 관계인(배우자, 2촌 이내 친족, 후견인에 한정한다)이 신고·요청하는 경우에 구조자(要救助者)의 이동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이동통신사로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수동 조회의 경우에도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요청과 위치정보사업자의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제공은 위치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26)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가정폭력의 위험을 피하여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를 파악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출인의 구체적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출인이 소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인근의 긴급구조현장에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가출인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동행하고 있고 ② 그 목적이 “효과적인 구조활동”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여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 규칙」

해양경찰청은 “해양긴급전화 122”의 운영에 관한 훈령인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 규칙」에서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 접수요령(제23조)와 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방법 등(제24조), 조치결과 통보(제25조), 경보발송 요청(제26조)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동 훈령은 일부 위치정보법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개인위치정보 조회는 해양긴급신고전화 122 시스템을 통한 자동 조회를 “원칙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면서(제24조), “위치정보수동 조회서”를 정의²⁸⁾하고 그 서식을 정하고 있다. 즉,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요청과 제공을 규정한 위치정보법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개인위치정보의 요청과 제공을 전제로 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²⁹⁾ 둘째,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 규칙」 중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5장(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은 원칙적으로 신고자에게 요구조자의 정보제공을 금지하면서도 해양경찰소속 인원의 판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제25조(조치결과 통보) 제2항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고자와 요구조자 간의 관계가 배우자 등의 관계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구조자 관련 정보제공은 주무과장 또는 당직관,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소방방재청의 「

28) 동 훈령 제2조 제9호는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를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29) 만일 소방방재청의 수동 조회와 유사한 개념과 제도를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동 지침에 이를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관리지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 규칙」 제25조 제2항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 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치 정보법 제29조 제8항³⁰⁾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 규칙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의 지침과 달리 “배우자 등의 관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구조의 목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치정보법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4.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및 관리 지침」

경찰청은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및 관리 지침」은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자와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요건 및 절차, 개인위치정보의 활용 및 제공 범위,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받은 자료 관리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동 지침은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 요청’이 필요하고, ‘긴급구조 요청’은 ① 요구조자 본인 ② 목격자 ③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자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자 등이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동의·의사확인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30)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와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 4> 경찰청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요건

신고자	위치조회 대상	신고내용	위치조회 가능 여부
요구조자	요구조자	본인 구조요청	동의 없이 가능
목격자	목격자	신고자와 장소적으로 인접한 사람에 대한 구조요청	목격자의 동의받아 가능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자	요구조자	신고자가 요구조자와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으며, 요구조자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경우의 구조요청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후 가능
실종아동등의 보호자	실종 아동등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 구조 요청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가능

그리고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의 ‘긴급구조 요청’인 경우만 해당하지만, 112로 신고전화가 왔으나 통화 불가능 등으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 112에 전화를 건 사실 자체를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추정하여 위치정보 조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전화 또는 경찰관서 방문을 통한 신고 등 112를 통하지 않은 신고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이 불가능 하므로, 112로의 신고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표 5> 경찰청의 제3자 신고 시 긴급구조상황 판단

상황별 구분	내 용	위치조회
범죄 피해자	납치·감금, 강도, 성폭력 등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 피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에 해당

제 3 절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정보활용에 관한 현행 제도

상황별 구분	내 용	위치조회
치매환자	보호자의 보호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로써 현재 보호상태를 이탈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지적장애인		
실종아동		
자살기도	자살을 암시하는 유서가 발견되거나, 음성·문자 등을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조 난	자연재해로 인하거나 산중·해상 등 자연적 환경에 적절한 보호수단을 없이 방치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단순가출	보호자의 보호상태를 이탈하기는 하였으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추정할 특별한 징후를 발견치 못한 경우	
행방불명		
· 연락두절		

그리고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출동요소(경찰관)에게만 제공하고,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자가 효과적인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그 외 출동요소 및 소방 등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개인위치정보주체를 제외한 제3자에게의 제공은 금지하지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권자의 승인 하에 제공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3자의 신고에 의해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는 “구조받을 사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을 엄금(嚴禁)하고 있다.

제 3 장 긴급구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이 장에서는 먼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긴급구조에 있어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의사 그리고 긴급구조대상인 아동활동, 긴급구조에 관한 상황적 요건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그리고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의 공통적 규율방안,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확인 절차의 개선과 기술적 조치 그리고 긴급구조 요청수단과 관련한 문제 등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제 1 절 긴급구조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의사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 등

1) 개인위치정보 수집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요청³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을 하면 위치

31) 법문은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등이 하는 것이고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15조제1항제1호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9조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정보사업자가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동의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5항).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등의 범위 확대

위치정보법은 제정 당시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본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으로 극히 제한하고 있었다. 신고자 본인이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심의 의사를 추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정한 구조신고라면 신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정 당시 위치정보법은 내밀한 관계에 있는 남편(또는 아내, 부모, 자녀)가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아내(또는 남편, 자녀, 부모)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한 후에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즉,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본인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① 제한적 활용기관(긴급구조기관), ② 제한적 구조요청권자(배우자), ③ 제한적 활용상황(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 및 ④ 활용여부에 대한 판단책임 등 개인위치정보 오남용을 위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몇 차례의 위치정보법 개정을 거치면서 ① 활용기관은 경찰관서로 확장되었으며 ② 구조요청권자는 배우자에서 2촌 이내의 친족

등으로, 다시 목격자³²⁾까지 확대되었고 ③ 실종아동등의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라는 요건도 배제되었다.³³⁾ 그런데도 제29조 제5항은 변경 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에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긴급구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요건이 제정 당시와 달라지거나 추가된 상황에서 본인(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본인의 “동의 없음”이 소극적인 경우(동의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경우(거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2. 구조요청자의 유형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의사

1) 요구조자가 직접 구조를 요청한 경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구조요청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경우에는 첫째, 신고자는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째, 본인이 직접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를 선별하여 구조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셋째, 본인이 구조요청자이기 때문에 구조요청권자의 확대와는 관련이 없고, 넷째,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조요청시점에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위치정보사업자가

32)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를 말한다.

33)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가 구조활동에 앞서서 요구조자(要救助者)가 구조가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지만, 경찰관서의 경우에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생략되어 있다. 짐작컨대 실종아동등의 경우에는 구조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³⁴⁾ 그리고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에 놓인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구조를 요청하는 것은 앞서 표시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를 번복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구조요청시점에 앞서서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요구구조자의 배우자등이 구조를 요청한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구조요청권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서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으로 확대되었다. 제정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구조요청권자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06년 개정을 통하여 형제자매는 물론 직계혈족의 배우자(계부, 계모, 사위 또는 며느리 등),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처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혼(前婚) 중의 자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시숙, 시누이, 처형 또는 처제 등),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매형, 매제, 형부 또는 제부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처남댁, 시매부(媿妹夫) 또는 동서(同壻) 등) 그리고 미성년후견자로 확대되었다.³⁵⁾

제2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구조요청권자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보다 한층 넓은 개념이다.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34) 제29조 제1항과 제2항제1호가 각각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본인의 구조요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양자는 각각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함과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을 보호”하기 위함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35)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등)과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백부 또는 숙부 등)는 방계혈족에 해당하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조카사위(姪壻) 또는 조카며느리(姪婦) 등)는 인척에 해당하지만 2촌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29조제1항의 구조요청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이들 가운데에서도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즉,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후견인³⁶⁾은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위치정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하게 된다.

첫째, 2촌 이내의 친족이라는 신분이 요구되는 것은 긴급구조기관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의 제정 당시에 고려한 “제한된 활용기관”의 확대와는 무관하다. 둘째,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라는 제한적 활용상황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요건이며, 셋째, 활용여부에 대한 긴급구조기관의 판단책임도 여전히 요구된다. 따라서 민감정보인 개인위치정보를 당사자(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제한된 자”³⁷⁾의 범위로서 2촌 이내의 친족이 적절한 것인가만 문제가 된다.

생각건대 2촌 이내의 친족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밀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동서지간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으로 긴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2006년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형제·자매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친권자가

36) 현행 「민법」 제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14일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변경되어 2015년 10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37) 물론 구조요청자는 요구조자(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의도하기 보다는 (그 수단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긴급구조기관이 요구조자를 신속·안전하게 구조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자살기도 등의 긴급한 경우에 그 위치추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되므로 앞으로는 형제·자매도 위치추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이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제정 위치정보법이 정한 구조요청권자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형제자매조차도 배제되는 것이 문제였다면, 그 범위의 확대는 “2촌 이내의 친족과 미성년후견인”이 아닌 “2촌 이내의 혈족과 미성년후견인”으로 하는 것이 입법의도에 좀 더 부합하였을 것이다. 또한, 제29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친족관계라는 일정한 신분이 요구되는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³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으로 구조할 것을 요청하면서 이러한 신분관계를 증명 또는 소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도 낮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긴급구조기관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등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를 밝힌 경우라면 더욱더 구조요청권자로서 “2촌 이내의 친족”의 타당성이 약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서에 대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하나로서 목격자와 비교한다면 “2촌 이내의 친족”이라는 신분관계는 상대적으로 요구조자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에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요청을 하게 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로 볼 수 있다.

38)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과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로 제한되며(같은 법 제14조 제7항 및 제14조의2 제2항),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은 본인으로 제한된다(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

3) 요구조자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201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경찰관서를 포함하면서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요구조자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자가 경찰관서에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요구조자가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29조 제2항).

그런데 제29조 제5항이 “...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 경찰관서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법 제29조 제3항은 “제2항제2호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³⁹⁾가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법 제29조 제3항의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경찰관서가 확인하여야 하는 요구조자의 의사는 구조요청에 대한 의사뿐만 아니라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대한 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⁴⁰⁾ 제29조 제5항이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요청

39)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받을 사람이 사전에 경찰관서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리고,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직접 구조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40) 요구조자가 구조요청의 의사는 있지만 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의사는 없는 경우, 즉 ‘(본인의) 개인위치정보는 이용하지 아니하면서도 구조

기관이 긴급구조기관에서 경찰관서로 확대된 것 외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신설된 제3항은 제5항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구조자(개인위치정보주체)의 의사에 기초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제공·이용하기 때문에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시점 이전에)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관서가 확인한 요구조자의 의사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경찰관서에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요구조자가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였고 긴급구조상황으로 판별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가 요구조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에 놓인 국민을 방치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4) 목격자가 구조를 요청한 경우

201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은 다른 사람이 요구조자의 구조요청을 받아 경찰관서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목격자⁴¹⁾가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되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요구조자가 아닌 목격자(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이고 경찰관서는 목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게 되는 개인위치정보주체(목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음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를 하여달라’는 경우는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41)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를 말한다(제29조 제2항 본문).

5)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구조를 요청한 경우

제29조 제2항 각 호의 경우 즉, 각각 개인위치정보가 수집되어서 경찰관서에 제공되는 당사자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목격자)는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요구조자)는 제29조 제3항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실종아동등)은 실종아동등의 동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납치 또는 유괴 등 범죄에 의하여 실종아동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실종아동등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여타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법령이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과 실종아동등은 범죄에 의한 것 외에도 단순가출 등을 포함하고, 이 경우에는 거의 만 18세에 이르는 경우⁴²⁾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선별적으로 제한하거나 거부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3. 구조요청권자 범위의 조정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본인, 요구조자가 구조를 요청한 제3자 및 목격자를 제외하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음” 또는 “거부의사”는 친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제정 위치정보법과 2006년 개정법의 입법목적에 충실한다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⁴³⁾ 구조요청권자를 생계를 같이 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42) 심지어는 가출일로부터 수년이 흘러 당해 실종아동등이 성인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43)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포함하지만(「민법」 제767조), 혈족은 직계혈족(직계존속

근친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3촌 관계에 있는 친족(백부, 숙부 또는 조카 등)이라도 이를 배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실종아동등의 경우에는 연령 또는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거나 실종아동등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긴급구조 대상으로서 아동

1. 위치정보법 상의 아동의 개념

위치정보법은 아동의 보호에 관한 3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당해 아동에 갈음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26조이고, 두 번째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25조 그리고 긴급구조 대상으로서 실종아동등에 관한 규정한 제29조이다.

1) 8세 이하의 아동

먼저 위치정보법 제26조는 자기의 행위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지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위하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본인의 의사에

과 직계비속)과 방계혈족(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에 한정된다(같은 법 제768조). 따라서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는 경우에는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과 2촌을 넘는 친족(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제외된다(같은 법 제768조 및 제769조).

반하는 경우라도 본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입안 목적으로 한다. 즉,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불가능하며,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 또는 미취학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갈음하여 친권자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그 범위는 제한적이어야 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법제처, 국회법제실 등은 의사무능력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상이 되는 의사무능력자등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초기 위치정보법안은 본인에 갈음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하고 있었다. 즉, “제24조(아동등의 보호) ① 법정대리인이 만14세 미만의 아동·의사무능력자 등(이하 “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넓게 인정하고 있었다.⁴⁴⁾⁴⁵⁾ 이러한 태도는 입법예고 단계를 지나 2004년 초까지 이어졌지만, 법제처 제출에 앞서 “만 7세 미만”으로 수정된다. “만 14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수정된 것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를 확대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범죄로부터 도피한 청소년을 가해자인 법정대리인에게 노출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범위를 축소한 것이며, “만 7세 미만”의 의미는 미취학아동으로

44)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와 내부보고자료,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 추진”, 2002. 7. 24, 11쪽.

45) 이에 대하여 당시 법무부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들을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는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인격권의 침해 또는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취학여부에 따라 위치정보법 제26조의 적용여부가 갈리게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만 7세 미만”으로 한 것이다.⁴⁶⁾

2) 14세 미만의 아동

본인에 갈음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하향하면서, 함께 마련한 규정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제25조이다.

즉, 개인정보수집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고, 14세 미만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구하도록 하는 여타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과 달리, 대상 연령별로 3단계로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다.

먼저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어려우며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해 아동에 갈음하여 법정대리인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당해 아동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중요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고 정보평가 및 진위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동 단독의 의사표시에 기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아동을

4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 7세 미만”은 국회 법안심의회과정에서 “8세 이하”로 수정된다. 대체토론 요지를 살펴보면 서상기 의원이 의사무능력자의 연령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왜 “8세 이하”인지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아동의 동의와 함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의 동의뿐만 아니라 당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아동은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⁴⁷⁾ 마지막으로 14세 이상의 사람의 경우에는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3단계 분류는 개인위치정보의 침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과 아울러 개인위치정보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한편, 절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적극적인 보호의 틀 안에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동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⁴⁸⁾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⁴⁹⁾은 같은 법 제15조 제1항⁵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와 함께 법정

47) 조용혁,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정보화정책」 제12권 제2호, 한국전산원, 2005, 135쪽.

48)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1. 12, 136쪽.

49)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50)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개인 정보 보호법」 제22조 제5항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으로 보아서,⁵¹⁾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명시적으로 개인 위치정보주체 본인에 갈음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위치정보법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비록 영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당해 아동의 동의가 무의미하더라도, 일정한 연령 이상의 아동 또는 청소년은 자아를 가진 인격체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때로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며, 이러한 해석이나 입법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치정보법이 이러한 두 가지 경우를 조화롭게 규율하고자 한 고민의 산물이라는 점이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3) 실종아동

이른바 “수원토막사건(오원춘 살인사건)”을 계기로 위치정보법은 2012년 개정을 통하여 경찰관서에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3가지⁵²⁾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유형이 “실종아동”이다.⁵³⁾ 여기에서 실종아동

51) 정보통신망법도 제22조 제2항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3호)”를 들고 있다.

52) ①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②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③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을 의미한다.

2. 긴급구조대상 실종아동 관련 개선방안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경찰관서의 장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은 2008년 7월 31일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치정보법 개정안에서
발견할 수 있으나,⁵⁴⁾ 동 개정안은 2012년 5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면서 폐기되었다.

현행 위치정보법 제29조는 실종아동등의 정의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을 원용하고 있는데,
실종아동법 제2조 제1호⁵⁵⁾ 및 제2호⁵⁶⁾에 따르면, 실종아동은 “보호자
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⁵⁷⁾ 미만인 아동”을 말한다. 아동이

53) 위치정보법 제29조 제2항 제3호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명시하고 있고, “실종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함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동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도 포
함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아동에 제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54) 제29조의2(실종아동 등의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국가경찰관
서의 장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이하 “실종아동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등에 대한 긴급구조요
청이 있는 경우에 긴급구조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실종아동 등의 긴급구조 외의 목적
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5)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동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56)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
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
을 말한다.

57) 2012년 개정으로 실종아동등의 개념이 위치정보법에 포함될 당시에는 실종아동

보호자로부터의 이탈된 원인은 약취(略取)·유인(誘引), 유기(遺棄), 사고 또는 길을 잃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출과 기타의 사유를 막론한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의 고등학생이 자의에 의하여 가출을 한 경우에도 실종아동에 포함되며, “실종 당시 18세 미만”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출 이후 수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실종아동에 해당하게 된다. 즉, 보호자(친권자 등)⁵⁸⁾이 생명·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또는 이를 명분으로 하여, 17세인 가출자녀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가출 당시 18세 미만이면 가출자녀가 2~30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요청은 이미 2011년부터 실종아동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실종아동법은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⁵⁹⁾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⁶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¹⁾ 실종아동법의 규정은 “실종아동의 생명·신체의 보호”의 목적으로 하는 위치정보법과 달리 단순히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목적으로 하여도 가능하고, 위치정보법은 보호자의 긴급구조요청을 요건으로 함에 반하여 실종아동법은 경찰관서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법은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3년 6월 4일 실종아동법의 개정으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변경되었다.

58)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실종아동법 제2조 제3호).

59)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60)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61) 실종아동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한편, 위치정보법 제29조는 요구조자(要救助者)가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조자(要救助者)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⁶²⁾ 이 요건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경찰관서로 하여금 요구조자(要救助者)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아동에 관해서는 경찰관서로 하여금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⁶³⁾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긴급구조요청과 관련해서는, 실종아동의 대상연령(실종 당시 연령 및 현재의 연령)과 보호자로부터의 이탈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요구조자(要救助者)가 되는 아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요구조자(要救助者)인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3 절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위치정보 요청의 상황적 요건)

1.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이 필요한 상황

급박한 위험상황이 아님에도 단순가출 또는 부부싸움 뒤 위치확인, 자녀의 늦은 귀가 등 사적 목적으로 급박한 위험으로 신고하고 위치정보조회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상황적 요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가출 또는 가정불화 등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신고자는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를 통하여 누군가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는 그 대상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과

62) 제29조 제2항 제2호 참조

63) 실종아동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실종아동법도 동일하다.

함께 국가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이로 인한 긴급구조라는 공공서비스 자원 활용의 실패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긴급구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요건의 충족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측면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안전망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긴급구조를 위한 행정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경찰·소방인력과 출동 예산낭비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상황적 요건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들어나는 대표적 사례로서 자살예고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요청이 필요한 상황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자살예고 등에 대한 개인위치정보 요청의 적절성

1) 자살예고 관련한 위치정보 수집·활용의 적절성

위치정보법 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요청 상황을 제29조의 법 목적인 ‘긴급구조’에 한정해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 ‘긴급구조’에 ‘자살예고’ 문자 혹은 자살을 암시하는 전화통화 내용 등이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자살을 예고하거나 암시하는 문언 또는 음성통화(이하 “자살예고등”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서의 구조활동에 대한 위치정보의 활용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논외로 한다.

심리학적으로는 자살예고를 목적형, 감정표출형, 절규형, 정리형 등으로 구분하고,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하여 도움을 갈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만, 법리적으로는 자살예고등을 구조를 바라는 외부적 용태(外部的 容態)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자살예고등을 경찰관서에 의한 긴급구조의 상황적 요건으로 인정하는 해석이 법문의 해석범위를 넘는 지나친 확대해석 또는 자의적 해석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위치정보법의 가장 중요한 입법목적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른 제한은 국가 또는 긴급구조기관에도 동일하게 미치고, 같은 맥락에서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위치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위치정보 이용에 대한 법문의 해석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제29조제1항의 긴급구조기관에 의한 위치정보 활용에 있어서 종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살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고, 119로 신고 접수된 자살 관련 사건에서 위치정보를 활용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문의 해석에 있어서 확장해석 또는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과 동시에 제29조제1항의 해석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제29조제2항 각 호를 나누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 2)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제29조제2항제1호)

제29조제2항제1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당사자가 직접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이고, 後者は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자를 목격한 제3자가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첫째, 前者의 경우 즉, 누군가가 경찰관서에 대하여 자살예고등을 하는 경우는 그 빈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공권력기관이고 생면부지인 경찰관서에 자살예고등을 하는 것은 일응 자살의도가 진의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찰관서에 대한 자살예고등을 구조를 요청하는 내심의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구조활동기관은 119로 인식되고 112는 범죄수사기관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구조요청(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살의도로부터 스스로를 구조해달라는 요청)의 진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⁶⁴⁾ 다만, 경찰관서에 대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진 자살예고자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後者의 경우는 자살예고등과는 연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살예고등이 아니라 자살시도자를 목격한 제3자가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긴급구조를 위하여 경찰관서가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볼 것이다.

3)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제29조제2항제2호)

제29조제2항제2호는 ‘누군가가 제3자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다시 제3자가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⁶⁵⁾ 이를 자살예고등과 연관하여 상정해보면, 가장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인 ‘누군가가 제3자에 대하여 자살예고등을 하고, 제3자가 경찰관서에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형태로 볼 것이다. 이 경우 제3자에 대한 자살예고등이 구조를 요청하는 내심의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제3자에 대한 자살예고등은

64) 세월호 사고 당시 119구조요청은 23회인 반면에 112는 4회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65) 이때의 제3자(법문은 ‘다른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구조를 받은 사람’과 ‘경찰관서’ 등을 제외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자살에 대한 진의와 실행가능성 등에 따라 다양한 양태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⁶⁶⁾

첫째, 자살의 진의가 없다면 자살시도 가능성(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긴급구조를 요하는 경우로 볼 것이 아니다.

둘째, 자살의 진의가 있고 자살시도 가능성(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자살시도 가능성(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제3자가 자살을 방지해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도 공존하는 경우도 가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란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자초할 가능성이 있는 자(자초위난 예상자)’를 구조대상자로 볼 것인지는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실종아동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제29조제2항제3호)

제29조제3항제3호는 실종아동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자살예고등과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⁶⁷⁾

5) 사후적 의사확인의 적절성

‘자살예고’등을 제29조제2항제2호의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로 본다면,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66) 반면, 제29조제1항은 ‘급박한 위협’을 요건으로 할 뿐, 당사자의 구조요청의 외부적 용태(外部的 容態) 또는 내심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67) 이 경우도 당사자의 구조요청의 외부적 용태(外部的 容態) 또는 내심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때 ‘자살예고’ 문자를 수신한 상황 등을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로 해석, 위치정보요청 후 의사확인 사유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며, 제29조제2항 제2호의 요건을 해당하여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자살의 진의가 있고 자살시도 가능성(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이 있는 경우라면,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자 가해자라는 측면에서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 자살예고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의 책임

위치정보법 제15조는 동의를 얻지 아니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자살예고’등의 경우가 ‘긴급구조’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긴급구조상황으로 보아 경찰관서가 위치정보법 제2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 즉 위법한 위치정보수집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은 위치정보사업자를 포함하는 모든 자에게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치정보사업자 등이)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문을 문리해석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수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

단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음을 사유로 위치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반면,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수사 또는 사적 이용 등) 긴급구조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법정 절차를 위반한 요청 등의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치정보사업자는 적법한 근거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사례로서 수사관서의 요청에 따른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⁶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네이버(당시 NHN)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 甲 회사(엔에이치엔 주식회사)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와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의 재량을 규정한 반

68) 서울고법 2012.10.18, 선고, 2011나19012, 판결.

면에 위치정보법 제29조 제5항은 경찰관서의 요청에 대한 거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위치정보사업자는 불법에 대한 고의는 물론 인식도 없었을 가능성이 크며, 행정기관(경찰관서)의 적극적인 행위(법적 근거를 명시한 위치정보 제공요청)는 ‘그 행위가 적법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법률의 착오 또는 기대불가능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責任阻却).

3. 개선방안

사회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살예고등을 한 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경찰관서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지만, 이미 입법적으로 활용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방방재청(119)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9조제1항과 제2항이 각각 소방방재청과 경찰관서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만, 긴급상황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위치정보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긴급상황이 치안 또는 범죄, 수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아니한다. 인적요건(본인·배우자·2촌·미성년후견인 vs 본인·목격자·제3자·보호자), 상황적 요건(급박한 위협의 존부), 주관적 요건(본인의 要救助에 대한 의사)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입법적으로는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개인위치정보 활용기관의 통일적 규율

1. 기관별 개인위치정보 요청의 요건

위치정보법이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기관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두 종류인데, 입법주체(정부·의원)와 입법시기(2005년-2012년)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긴급구조기관(소방방재청·소방본부·소방서,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제한된 신분적 관계를 가지는 구조요청권자(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가 ② 구조가 필요한 상황(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에 놓인 ③ 요구조자(구조요청자 본인, 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또는 후견대상 미성년자)에 대한 ④ 긴급구조를 요청을 한 경우로서⁶⁹⁾ ⑤ 긴급구조 상황으로 판단된 경우이다.

2) 경찰관서(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제한된 신분적 관계를 가지는 구조요청권자(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가 ② 구조가 필요한 상황(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에 놓인 ③ 요구조자(구조요청자 본인, 그 배우자, 2촌 이내 친족 또는 후견대상 미성년자)에 대한 ④ 긴급구조를 요청을 한 경우로서 ⑤ 긴급구조 상황으로 판단된 경우이다.

69) 제29조 제1항 2문은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함으로써 긴급구조요청을 다른 목적으로 오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표 6>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비교

이용기관	구조요청자 (신고자)	위치정보 수집 대상	이용목적	신고내용	비 고
긴급구조 기관	要救助者 (개인위치정보주체)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要救助者 (개인위치정보 보주체)	·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보호	· 要救助者(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해 구조요청	· 긴급구조기관이 구조 상황 여부 판단
	要救助者 (개인위치정보주체) 목적자	要救助者 목적자	· 생명·신체를 위협 하는 급박한 위험 으로부터 보호	· 본인 구조요청 · 신고자와 장소적으로 인접한 사람에 대해 구조요청	· 목적자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경찰관서	제3자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자)	要救助者	-	· 신고자가 要救助者和 장소적으로 인 접해 있지 않으며, 要救助者의 위치 를 알지 못하는 경우의 구조요청	· 要救助者 의사확인 필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	실종아동등	· 생명·신체의 보호	·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 요청	· 급박성 不要 ·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 요건의 통일방안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은 긴급구조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마련된 규정이지만,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두 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각기 상이하다. 하지만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선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두 규정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도를 일관되게 해석할 만한 원칙을 찾기는 어렵다.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경찰관서로 확대되고,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 그리고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 목격자까지 확장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지 않는다면 현행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요건은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첫째,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의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에 속하는 소방방재청·소방본부·소방서,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와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를 망라하여 긴급구조기관으로 한다.

둘째,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상황은 ① 위협의 종류는 현재와 같이 재산에 대한 위협을 제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한정하고, ② 위협상황은 급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도록 한다.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없는 실종아동등은 제외한다.⁷⁰⁾ 이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70) 다만, 실종아동등이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에 처한 경우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긴급구조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가 필요한 당사자(요구조자)와 ② 요구조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및 미성년후견인(가족) ③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사전에 지정한 자(지정자)⁷¹⁾ ④ 요구조자가 긴급구조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 요구조자의 구조요청을 받은 자(구조요청전달자)로 한다.

제정 위치정보법과 2006년 개정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요구조자와의 신분관계에 의하여 구조요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긴밀한 신뢰관계가 인정되는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 미성년후견인)으로 제한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인척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등을 구조요청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목격자가 다른 사람의 지근거리에서 해당 요구조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목격자의 위치정보를 통하여 “위험에 처한 자”의 위치정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이용 대상인 목격자의 동의를 구하면 된다는 점에서 긴급구조기관에 관한 특칙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긴급구조기관에게는 긴급구조상황을 판단할 책무를 부여한다.

다섯째, ① 가족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한 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긴급구조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요구조자가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구조자의 동의를 받고, 목격자가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71) 이를 위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에 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아닌 자 중에서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긴급구조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지정한 자

② 긴급구조기관등은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그 사람이 긴급구조기관등에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긴급구조기관등은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목적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은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을 위하여 부여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에 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긴급구조기관등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구조기관등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통보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긴급구조기관은 태풍, 호우, 화재, 화생방사고 등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경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위험지역에 위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보발송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긴급구조기관등 및 긴급구조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긴급구조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긴급구조기관등은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복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요청자
2. 요청 일시 및 목적
3.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
4.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제2항 및 제3항에 한한다)

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긴급구조요청,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절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

1. 가족관계의 확인 절차 개선

1) 가족관계의 확인 필요성

위치정보법 제29조 제1항⁷²⁾은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의 긴급구

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상황을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긴급구조요청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아니라면)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의 긴급구조요청’인지 즉, 긴급구조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에 위치정보법이 정한 ‘일정한 인적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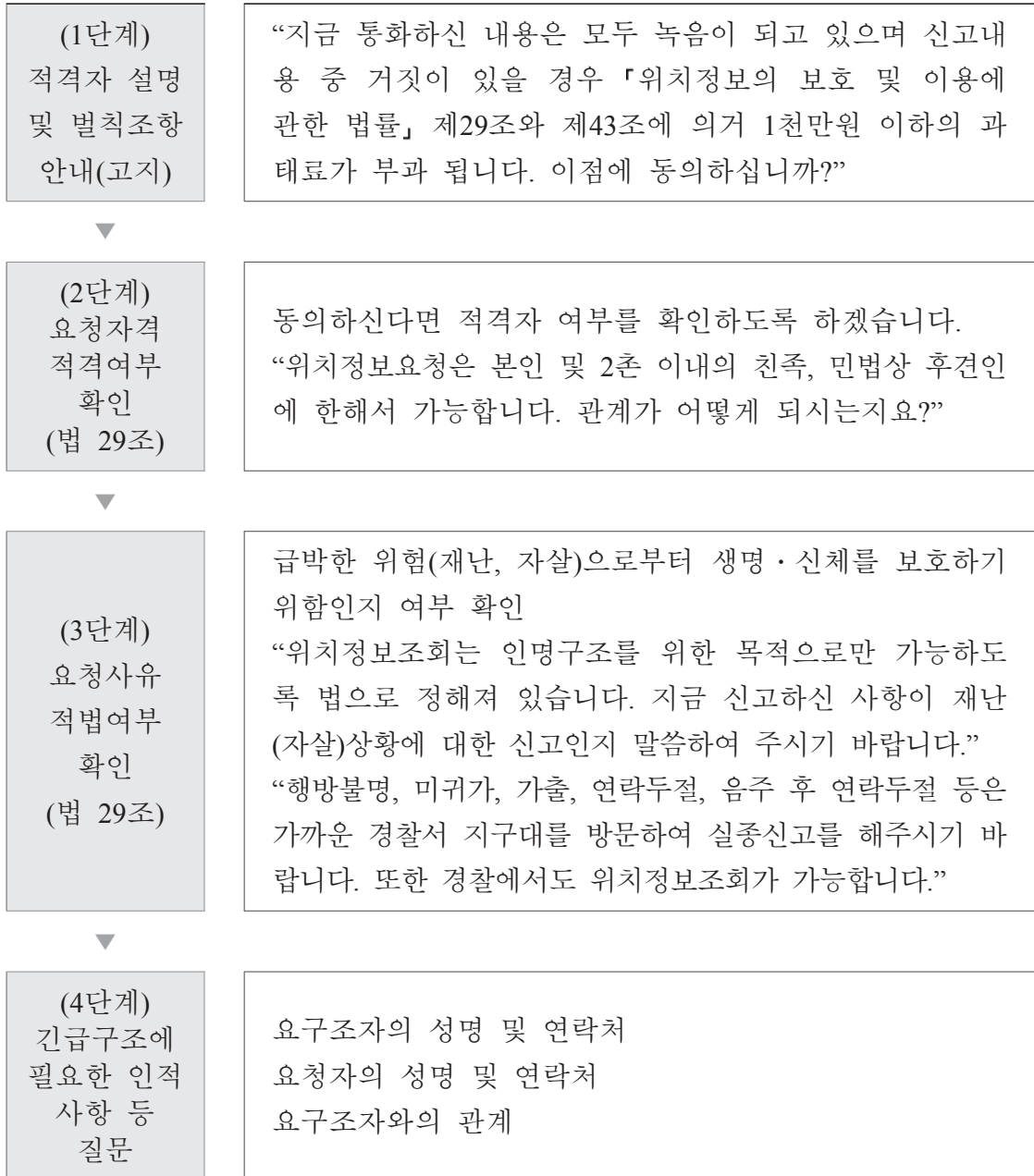
위치정보법의 제정당시에는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일정한 인적관계’가 당사자 본인(개인위치정보주체)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으로 제한되었으나, 2006년 개정을 통하여 그 범위가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으로 확대되었다.

긴급구조기관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즉, 일정한 인적관계가 일부 확대되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긴급구조기관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要救助者)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와 구조대상자 사이에 위치정보법이 정하고 있는 인적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현행 가족관계 확인절차

현재 긴급구조기관은 신고자(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의 긴급구조요청이 접수되면, ① 적격자 설명 및 벌칙조항 안내(고지)와 ② 요청자격 적격여부 확인 ③ 요청사유 적법여부 확인 ④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의 질문의 단계를 거쳐 대응하고 있다.

<그림 2> 긴급구조요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대응절차



긴급구조기관(소방관서)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고자(긴급구조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구조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긴급구조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긴급구조기관은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자(긴급구조요청자)와 구조가 필요한 사람(개인위치정보주체)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가까운 119안전신고 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 신고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족관계 확인절차는 매우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긴급상황을 외면한 절차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서면을 통한 가족관계확인 지연은 긴급구조출동의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긴급구조출동을 하고 사후에 가족관계 증명자료를 받는 제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증명서류의 사후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전화 수신을 거절하는 등 가족관계 확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⁷³⁾

이러한 점이 긴급구조상황에서 가족관계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는 배경이다.

3)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의 제한

종전에는 「호적법」 제124조의6(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⁷⁴⁾에 따라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자와 요구조사 간의 인적관계를 확인하여 왔고, 소방방재청예규인 「이동전화

73) 이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 2, 15~16쪽.

74) 제124조의6(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제12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부 및 제적부에 기록된 호적사항에 관한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호적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위치정보 관리지침」은 호적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⁷⁵⁾ 그러나 2007년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마련되면서 신고자와 요구자 간의 인적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정보 자료는 호적전산정보자료에서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로 바뀌었고, 이를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①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② 자료의 범위 ③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①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과 ②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③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 대책 확보 여부 ④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⑤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록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한편,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며,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⁷⁶⁾

그런데 종전에 법원행정처는 긴급구조라는 이용목적의 공익성과 그 이용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위치정보법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자와 요구자 간의 인적관계 확인을 위한 호적전산정보자료 이용의 협의에

75) 제5조의3(호적전산정보 이용) ①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 주체간의 배우자등 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에 설치된 호적전산정보 조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호적조회 기능은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 주체간의 배우자등 관계 여부 확인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7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17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우호적이었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는 법률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개선수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3년 12월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긴급구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긴급구조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긴급구조가 필요한 자)간의 인적관계 확인을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30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⁷⁷⁾

이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확인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긴급구조의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긴급구조기관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⁷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사후규제제도는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77)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78) 이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 2, 17쪽.

동 개정안에 따라 위치정보법이 개정된다면 1차적으로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5)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관련 입법례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등록전산정보자료⁷⁹⁾의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단순히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을 명시하고 있는 유형이며, 두 번째는 이용근거와 함께 법원행정처의 협조의무 또는 조치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유형이다. 「국세기본법」과 「병역법」과 「수산업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초·중등교육법」과 「공직선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외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⁷⁹⁾과 같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제3자 제공, 누설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⁸⁰⁾

79)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80)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6) 법제개선방안

위치정보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점과 긴급구조요청을 빙자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구조요청자와 요구조자 간의 일정한 인적관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 급박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라는 측면에서 즉각적인 인적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외에는 실질적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긴급구조기관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정부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정부안과 같이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도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활용의 공익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긴급구조기관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관리하는 주체(법원행정처)의 협조의무 또는 조치의무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 3 장 긴급구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개정안(2013년 정부안)	수정대안
<p>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p>	<p>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다만,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에 의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구조 활동에 관한 요건을 통합하고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구조요청자의 범위를 이른바 목격자로 확대한다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은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

한편,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을 위치정보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가중된 구성요건 또는 강화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위치정보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할 실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2. 개인위치정보 정확성의 제고

1) 개인위치정보 정확성 제공의 필요성

위치정보법 제29조는 긴급구조기관(119·122) 및 경찰관서(112)는 본인 등의 긴급구조 요청시,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측정하는 방법은 ① 이동통신 기지국(오차범위 300m 이상, 크기는 1~2km)을 이용한 방법과 ② GPS 위성(50m 이상)을 활용한 방법, ③ Wi-Fi 접속지점에 기반한 방법(30m 이내) 등이 있지만, 위치정보법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수집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긴급구조기관의 위치정보 정확성 제고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 중 하나로, 구조요청자 휴대전화의 GPS 및 Wi-Fi 등의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긴급구조기관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당해 기능을 활성화(OFF→ON)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면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 국민을 구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관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위치정보수집장치의 측위 기능 즉, GPS기능을 활성화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2014년 4월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즉,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 위성항법측위기능 및 무선랜측위기능 등 위치정보수집장치의 측위 기능을 활성화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서는 ①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직접 긴급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②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급박하여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하고,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책은 좀 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법제개선방안

먼저 한선교 의원안의 핵심내용인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측위 기능 활성화”는 “위성항법측위기능 및 무선랜측위기능 등”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기지국을 기반으로 하는 측위기술도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측위 기능의 하나라는 점에서 위치정보 측위의 정확도 제고라는 입법목적은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치정보 사업자는 기지국은 물론 GPS(위성항법시스템), WiFi, Beacon, RFID, Zigbee 등 이미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치정보법이 기술적 중립성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치정보서비스의 다양성 확보와 위치정보산업의 지속 발전, 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후생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자명하다.

특정한 위치정보 측위 기술 또는 수단을 특정하여 명시하거나 강제하기 보다는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1안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가 현행 위치정보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위치정보

사업자가 보다 정확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할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2안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2안의 경우 정확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 판단을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가 한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의한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술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직접 긴급구조요청을 한 경우 또는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명백한 경우로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1안	<p>㉞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인공위성 또는 무선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한 위치측정기능을 활성화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 구조받을 사람의 정확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2안	<p>㉞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인공위성 또는 무선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한 위치측정기능의 활성화 등 구조받을 사람의 정확한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요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직접 긴급구조요청을 한 때 2.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명백한 경우로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 6 절 긴급구조 요청수단의 문제

1. 이동통신 외의 전화서비스에 의한 긴급구조요청

1) 이동통신 외의 전화서비스에 의한 긴급구조의 문제점

위치정보법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는 이동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존재하는 장소(또는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역시 이동성을 요소로 한다. 많은 긴급구조 요청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긴급구조 요청은 그 외에도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장소에 고정된 “유선전화 서비스” 및 특정 장소에 설치되어 이용되지만 이전이 용이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통한 긴급구조 요청의 경우에 위치정보사업자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의 요청에 따라 유선전화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가입지 주소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유선전화·인터넷전화의 주소지의 법적 성격

(1)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주소지

인터넷전화는 유선전화와 달리 당해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동의 또는 조작적 행위없이,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자의에 의한 이용장소의 변경이 용이하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될 수 있는 정보는 특정시점에서의 단말장치의 지리적 위치값이 아닌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주소지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역무(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자의 주소지는 위치정보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반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주소지는 가입 또는 변경 등의 단계에서 수집되는 정보이다. 즉,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주소지는 “위치”에 관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으나, 일정부분 고정성이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위치정보법이 규율하고 있는 위치정보라고 할 수 없다.⁸¹⁾

인터넷전화 주소지의 위치정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긴급구조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당해 정보의 제공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여부의 판단이 요구된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전화에 이용되는 단말장치는 휴대성이 없고 일정한 장소에 비교적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다수인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전화에 이용되는 단말장치에 비하여 개인과의 결합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화의 주소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인터넷전화라는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 관한 여타의 정보를

81) 한편, 인터넷전화의 경우 “인터넷전화의 주소지”와 “현재 이용지(접속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구조를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인터넷전화 서비스) 가입자의 현재 이용지를 수집하는 형태를 상정할 수 있으며, 그 수집방식에 따라 위치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제공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제1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동의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하고, 단서를 통하여 예외를 확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는, 제29조 제1항과 제2항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의없는 수집 등이 가능함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제정 당시의 제15조 제1항의 단서규정의 입법자의 의도는 물론, 제15조 제1항 제2호가 2012년 5월 개정을 통하여 경찰관서의 위치정보 요청권 신설과 함께 추가되었다는 점, 그리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15조 제1항 제3호)’는 위치정보법 제4조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5조 제1항 각 호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보유하고 있고, 이들 정보와의 결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 2013-57호)」 제3조에 따르면, 인터넷전화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의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인터넷전화의 주소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사목⁸²⁾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의 제공은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이용자의 주소 등 통신자료의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그 전제로서 통신의 비밀 침해·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인터넷전화의 주소지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인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유선전화 서비스의 주소지

유선전화는 전기통신회신설비에 고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유선전화역무 이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유선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청하고 당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조작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될 수 있는 정보는 전기통신역무(유선전화서비스) 가입자의 주소지로 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주소지는 위치정보법 제2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바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설비

82)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반하여, 유선전화 서비스의 주소지는 가입 또는 이전 등의 단계에 있어서 수집된 고정적 정보이므로, 위치정보법이 규율하고 있는 위치정보라고 할 수 없다.

유선전화 주소지의 위치정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긴급구조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당해 정보의 제공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여부의 판단이 요구된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유선전화에 이용되는 단말장치는 휴대성이 없고 일정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다수인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전화에 이용되는 단말장치에 비하여 개인과의 결합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선전화의 주소지는 상대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지만, 유선전화라는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에 관한 여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정보와의 결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유선전화는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유선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따라서 인터넷전화의 경우와 달리 유선전화의 주소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이용자의 주소”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에 따른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즉, 유선전화의 주소지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인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3) 제도개선의 방향

(1) 제도개선의 필요성

유선전화·인터넷전화의 주소지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긴급구조기관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치정보는 침해로 인한 피해의 위험성이 큰 개인정보임과 동시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2조 제11호,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치정보법은 인명의 구조 등 긴급구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정보로 보아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긴급구조기관이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선전화·인터넷전화의 주소지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에 해당하지만, 피구조자에 대한 구난활동이라는 공적구조를 위한 활용(긴급구조기관을 제3자로 하는 제공)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선전화·인터넷전화의 주소지를 긴급구조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긴급구조 목적의 유선전화·인터넷전화의 주소지의 활용을 위한 입법론

유선전화·인터넷전화의 주소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전기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이용자)를 제3자(긴급구조기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보

통신망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통신망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특정 사업군에 있어서 제한적 목적의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있어서 동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요금정산’, ‘법률 상의 특칙’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역무 이용한 정보제공자 + 전기통신역무 이용한 정보제공매개자)이 대단히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특칙을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유선전화·인터넷전화의 주소지가 동법에 따른 통신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적구조를 위한 전기통신사업자(유선전화·인터넷전화사업자)의 유선전화·인터넷전화 주소지의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공적구조를 위하여 위치정보법을 근거로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에 제공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선전화·인터넷전화의 주소지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긴급구조 목적의 유선전화·인터넷전화의 주소지의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위치정보법에 마련하는 것은 위치정보법의 입법목적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에 놓인 국민의 긴급구조

요청에 대하여 이동성을 기준으로 이동통신과 유선전화·인터넷전화를 구분하여 별개의 법에서 이원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긴급구조용 특수전화서비스의 정비

특수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따라 관리되며, 1YY 또는 1YYY계열의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또는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⁸³⁾

위치정보법의 최초 제정 당시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긴급구조기관을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으로 한정하였고, 이들 기관이 이용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는 “119”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18조는 화재신고 등을 위하여 부여된 “119”만을 명시하고 있었다.⁸⁴⁾

83) 제11조(특수번호) ① 특수번호는 1YY 또는 1YYY계열의 번호로서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또는 전기통신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번호계열별 용도와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다.

번호계열	자리수	용 도	관리주체
10Y	3	사업자의 민원안내 및 통신망 유지보수 등 통신업무 취급	방송통신위원회
11Y, 12Y	3	범죄, 간첩, 화재 등 긴급한 민원사항의 신고	방송통신위원회
13YY	4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상, 관광 등 생활정보 안내, 상담 및 대국민 홍보	방송통신위원회
14YY	4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예비)	방송통신위원회
15YY	4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부가서비스	사업자
16YY	4	기간통신사업자의 공통부가서비스	방송통신위원회
17Y~19Y 또는 17YY~19YY	3~4	예 비	방송통신위원회

84) 제18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그러다가 2007년부터 해양경찰청이 해상긴급 특수번호 “122”를 부여 받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위치정보법에 반영되었으며,⁸⁵⁾ 2012년 개인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경찰관서가 포함되면서 “112”도 포함되었다.⁸⁶⁾

그러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의 확대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탑승객들의 신고전화가 소방방재청의 119와 경찰청의 112에는 각각 23건과 4건이 접수되었지만, 해양경찰청의 122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⁸⁷⁾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세월호 침몰사고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09~2013년 “122” 신고전화 20만 7,000건 중 유효전화는 26%(5만 3,190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9%는 장난·오인·중복전화였으며 11%마저 타 기관에 넘긴 신고였다. 유효전화인 경우에도 ‘긴급상황’으로 분류된 사고 접수는 4,481건(2.2%)에 불과하고, 단순 안내접수가 4만 1,927건(2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민원접수 3,684건(1.8%), 범죄접수 2,325건(1.1%) 등으로 나타났다.⁸⁸⁾ 5년간 43억

전화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의하여 화재 등 긴급한 민원사항의 신고를 위하여 부여한 “119”를 말한다.

85)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1.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86)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1. ~ 2. (생략)

3.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87) 아시아경제, “[사설] ‘해상 긴급전화 122’를 아십니까?”, 2014. 4. 28,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2811290211654>

88) 박민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해양경찰청] 2013. 10. 28_122, 신고전화의 25.7%만 유효”, 2013.10.28.

원의 시스템의 운용비가 투입되었지만,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아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하여 “122”에 대한 홍보부족을 탓하기도 하고⁸⁹⁾ 119와의 통합론⁹⁰⁾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한, 경찰관서를 개인위치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긴급구조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된 논리는 112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경찰관서가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119”를 안내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는 점과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이 없는 지방이 있으며 이러한 곳에서는 경찰관서가 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영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수번호의 통합론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상황에 대한 특수번호 서비스는 시스템적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⁹¹⁾

더욱이 정부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과 해양경찰청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에는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각각 두며,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등 긴급구조 관련 업무는 국민안전처로 통합될 예정이다. 즉, 종전에 긴급구조 목적의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던 부처들이 국민안전처로 통합되는데, 향후에도 119와 122를

89) 동아일보, “‘해상 긴급전화 122’ 홍보만 됐더라도...”, 2014. 4. 24, <http://news.donga.com/3/all/20140424/63001509/1>

90) 서울신문, “긴급전화 시스템 119로 단일화해야”, 2014. 5. 9, 25쪽; SBS, “7년 전 도입했지만...아무도 모르는 ‘122’”, 2014. 4. 27, http://w3.sbs.co.kr/news/news_EndPage.do?news_id=N1002363651

91) 이러한 논의는 이미 정보통신부 시절에 시스템의 개략적인 모습을 그려보고 예산을 추계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그 실현가능성이 인정되었지만, 관리주체의 문제를 넘지 못하고 논의가 중단되면서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병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제라도 특수번호가 다수의 번호가 유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혼란방지를 위하여 통합할 수 있다는 점⁹²⁾을 상기하고, 특수번호의 이용자인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9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특수번호) ① ~ ⑤ (생략)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11Y, 12Y, 13YY계열의 특수번호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자의 혼란방지와 특수번호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를 다른 특수번호와 통합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동일기관에서 여러 개의 특수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2. 다수의 번호가 유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사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제 4 장 결 론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협으로 국민을 신속·효율적으로 긴급구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은 유용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통신사회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가 현대 사회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과 이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현황과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이용에 관한 법제의 연혁과 현행 제도를 살펴보고, 긴급구조 기관 및 경찰관서의 인명구조활동에 관련된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체계의 정비에 필요한 법제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의 타당성 등의 문제점을 요구조자가 직접 구조를 요청한 경우와 요구조자의 배우자등이 구조를 요청한 경우, 요구조자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가 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구조를 요청한 경우 등 구조요청자의 유형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제정 위치정보법과 2006년 개정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볼 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혈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구조요청권자를 생계를 같이 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는 근친으로 확대하고자 한다면 3촌 관계에 있는 친족(백부, 숙부 또는 조카 등)이라도 이를 배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실종아동등의 경우에는 연령 또는 긴급구조가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

정보의 제공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거나 실종아동등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긴급구조대상인 실종아동을 중심으로 위치정보법이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실종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긴급구조요청과 관련해서는, 실종아동의 대상연령(실종 당시 연령 및 현재의 연령)과 보호자로부터의 이탈의 원인 등을 고려하여 요구조자(要救助者)가 되는 아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요구조자(要救助者)인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긴급구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요건의 충족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측면은 물론 이거니와 사회안전망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살예고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이 필요한 상황적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은 긴급상황에 놓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라는 점은 같지만, 그 주체(소방방재청과 경찰관서 등)와 인적요건, 상황적 요건, 주관적 요건 등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찰관서는 자살예고의 사례에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함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긴급상황이 치안 또는 범죄, 수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는 반론도 존재하지만 이미 입법적으로 활용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사회안전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자살예고등을 한 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할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된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는 제29조 제1항과 제2항의 법률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입법주체(정부-의원)와 입법시기(2005년-2012년)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활용에 관한 규정의 개선방안을 앞서 살펴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안해 보았다. ①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의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에 속하는 기관을 망라하여 긴급구조기관으로 한다.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상황에 따른 위협의 종류는 현재와 같이 재산에 대한 위협을 제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한정하고, 위협상황은 급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하도록 한다. ②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없는 실종아동등은 제외한다. 긴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긴급구조가 필요한 당사자(요구조자)와 가족(요구조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혈족 및 미성년후견인), 지정자(개인위치정보주체가 사전에 지정한 자), 구조요청전달자(요구조자가 긴급구조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 요구조자의 구조요청을 받은 자)로 한다. ③ 요구조자와의 신분관계에 의하여 구조요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긴밀한 신뢰관계가 인정되는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 미성년후견인)으로 제한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인척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등을 구조요청권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긴급구조기관에게는 긴급구조상황을 판단할 책무를 부여한다. ⑤ 가족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한 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긴급구조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요구조자가 타인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요구조자의 동의를 받고, 목격자가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목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다섯째, 급박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긴급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였다.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활

용의 공익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긴급구조기관의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이를 관리하는 주체(법원행정처)의 협조의무 또는 조치의무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긴급구조를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적 문제로서 유선전화(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등 이통신역무 이외의 수단에 의한 긴급구조요청에 대한 법제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긴급구조용 특수전화서비스(119, 122, 112)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앞선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위치정보법의 개선안은 정책자료로서의 실용적 활용가치를 고려한 것으로서, 관계 법령의 정비를 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긴급구조의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주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이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 2.
- 오태원, “코드이론을 통한 위치정보법 분석”, 『인터넷법률』 통권 제39호, 법무부, 2007. 7.
- 조용혁,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고찰”, 『정보화정책』 제12권 제2호, 한국전산원, 2005.
- 최민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009. 2.
-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내부보고자료,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 관한법률』 제정 추진”, 2002. 7. 24.
- 박민수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_해양경찰청] 2013. 10. 28_122, 신고전화의 25.7%만 유효”, 2013. 10. 28.
- 동아일보, “‘해상 긴급전화 122’ 홍보만 됐더라도...”, 2014. 4. 24, <http://news.donga.com/3/all/20140424/63001509/1>
- 미디어뉴스, “국민 5명 중 1명 ‘위치정보’, 경찰 등에 제공됐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00>
- 서울신문, “긴급전화 시스템 119로 단일화해야”, 2014. 5. 9.
- 아시아경제, “[사설] ‘해상 긴급전화 122’를 아십니까?”, 2014. 4. 28,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2811290211654>
- 한겨레, ‘사망자 휴대폰’ 노동자 위치추적, 2004. 7.
- MBC, ‘생명이냐 사생활이냐’, 2002. 9. 17.

참 고 문 헌

SBS, “7년 전 도입했지만 ... 아무도 모르는 ‘122’”, 2014. 4. 27, http://w3.sbs.co.kr/news/news_EndPage.do?news_id=N1002363651

붙임

-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에 관한 근거를 둔 법률

[붙임]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에 관한 근거를 둔 법률

국세기본법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조세심판원장은 심사·심판 및 과세전적부심사 업무를 처리할 때 제56조제1항 단서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행정심판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인 지위 승계의 신고 또는 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 」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병역법	제80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 」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44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생략) ④ 행정관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 」 제11조제4항의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통계법	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u> 의

	<p><u>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p> <p>제24조(행정자료의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u>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행정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이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요청한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자료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p>	<p>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p>

<p>등에 관한 법률</p>	<p>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p> <p>2. ~ 5. (생략)</p> <p>② ~ ④ (생략)</p>
<p>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p>	<p>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① (생략)</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u>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u>,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공직선거법</p>	<p>제218조의6(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① 재외투표관리관이 국외부재자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덧붙여야 할 서류, 정당한 신고·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제218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를, 제218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를 각각 작성(전산정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야 한다.</p> <p>② 재외투표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만료일 현재의 최종주소지</p>

	<p>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선거일 전 49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10일간 재외투표관리관이 송부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중 가장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p> <p>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정보에 대하여 전산조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 3. ~ 4. (생략) ④ ~ ⑤ (생략)
<p>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p>	<p>제19조(공단의 권한 등) ① ~ ③ (생략)</p> <p>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6. (생략) 7. 연금수급자의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8. ~ 9. (생략) ⑤ (생략) ⑥ 제4항에 따라 공단이 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p>사회복지사업법</p>	<p>제33조의3(복지 요구의 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에 따른 서비스 제공 신청을 받으면 복지담당공</p>

[붙임]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에 관한 근거를 든 법률

	<p>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矯正)·<u>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p> <p>⑤ (생략)</p>
<p>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p>	<p>제18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① 법 제33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망 또는 자료를 말한다.</p> <p>1. ~ 2. (생략)</p> <p>3. 주민등록전산정보·<u>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교정 등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u></p> <p>② (생략)</p>
<p>상속세 및 증여세법</p>	<p>제80조(자료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소득세법</p>	<p>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를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p>

[붙임]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에 관한 근거를 둔 법률

	<p>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여권법</p>	<p>제10조(정보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u>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보자료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p>	<p>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국세·지방세·소득·재산,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주민등록·<u>가족관계등록</u>·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p> <p>② 제8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공단 등은 부담금 부과·징수,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그 밖에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소득·재산,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주민등록·<u>가족관계등록</u>·장애인등록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u>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u>관계 행정기관</u>이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u>요청할 수 있다.</u></p> <p>③ (생략)</p>

	<p>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u>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가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p>
<p>장애인 연금법</p>	<p>제 9 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2.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 3.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지급계좌 등 장애인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p>② ~ ③ (생략)</p> <p>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세·지방세, 토지·주택·건축물·자동차·선박·항공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무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기초연금, 출입국,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의 입소·출소, 매장·화장·장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u>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p>

	<p><u>이에 따라야 한다.</u></p> <p>⑤ (생략)</p> <p>⑥ 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 ⑧ (생략)</p> <p>⑨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p> <p>⑩ (생략)</p>
주택법	<p>제38조의7(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u>가족관계등록사항, 국세, 지방세, 금융, 토지, 건물(건물등기부·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 자동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② ~ ④ (생략)</p> <p>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4항에 따른 사업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초·중등	<p>제60조의7(조사·질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비</p>

<p>교육법</p>	<p>신청자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거짓 등의 자료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교육비신청자 및 지원이 확정된 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u>가족관계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③ ~ ④ (생략)</p>
<p>초·중등교육법 시행령</p>	<p>제104조의6(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60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주민등록전산정보, <u>가족관계증명, 출입국, 교정 등 복지 요구의 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u></p> <p>② (생략)</p>
<p>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p>	<p>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① (생략)</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u>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③ (생략)</p>

<p>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p>	<p>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u>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u></p> <p>2. ~ 15.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p> <p>⑤ (생략)</p> <p>⑥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	---